

남관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관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체험학습(개인·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하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제3조(운영 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교환학습(개인, 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비공개 처리),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제4조(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④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활동 기간

제6조(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④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⑤ 1인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서식 7>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참가자	학년	반	번	성명	전화	비고

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시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장소						
인솔보호자	기간	학생과의 관계	성명	전화		
체험학습 주제	<예시> · 국내·외 친지 방문 및 효도 체험학습 ·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 등					
학습내용						
확인사항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남관초등학교장 귀하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서식 8> :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신청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허가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누적사용기간/ 인정기간	일 / 일					
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월 일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인)						
보호자님 귀하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서식 9> : 체험학습 종료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 누 가

()학교	제 ()학년 ()반 ()번	이름 :
-------	-------------------	------

2. 연 제

기 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3.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	---

4.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가정의 가게, 돌아가신 분의 얼, 만난 친척, 추석 민속놀이, 고향의 자료, 추석 상차리기, 기타 국내외 각종 체험
어떻게	구체적인 체험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록
소 감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학생 :

(인)

남관초등학교장 귀하

결 재	담 임
	전 결

※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